

투표방법 및 투표용지 안내

□ 의장·부의장 선거 투표 방법

- 투표방법: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
- 투표용지: 붙임 참조
- 투표할 때에는 투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용지 뒷면 기표란 한 곳에만 기표

□ 무효처리

- 무효는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두 사람 이상 기표하거나
- 어느 기표란에 기표하였는지 알아볼 수 없도록, 2개 란에 중첩하여 표기한 것
- 기표용구 이외의 인장이나 필기구등 다른 방법으로 표시한 것

□ 기 권

- 출석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

□ 투표진행

- 투표하는 순서는 선거구 순서에 따라 실시(감표위원은 맨 뒤)
- 투표절차
 - 의사담당주사가 선거구 순서에 따라 호명 → 명패교부 → 투표용지 교부 → 기표소에서 기표 → 투표용지는 투표함에, 명패는 명패함에 투입 → 의석으로 돌아감

□ 투표용지

의장선거

투 표 용 지



거 창 군 의 회

선거구	성 명	기 표 란
가	강 철 우	
가	안 철 우	
가	강 창 남	
나	조 선 제	
나	조 기 원	
다	류 영 수	
다	백 범 영	
라	이 성 복	
라	김 재 권	
비례대표	이 애 숙	

□ 부의장 선거 투표방법

● 의장선거 방법과 동일

-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여야 하며, 의장은 부의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선거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음

□ 투표용지

부의장선거

투 표 용 지



거 창 군 의 회

선거구	성 명	기 표 란
가	강 철 우	
가	안 철 우	
가	강 창 남	
나	조 선 제	
나	조 기 원	
다	류 영 수	
다	백 범 영	
라	이 성 복	
라	김 재 권	
비례대표	이 애 숙	

※ 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은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이중 삭선

□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

- 상임위원장은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
(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)
- ※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선거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음(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)
- 투표용지 뒷면 기표란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1인에만 기표
(2인 기표 시 무효)
- 진행순서
 - 총무·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 → 총무·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 → 정회(총무·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출) →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선임 →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

□ 투표용지

- 총무·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

총무·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

투 표 용 지



거 창 군 의 회

구분	선거구	성 명	기 표 란
총무 위원장		○○○	
		○○○	
		○○○	
		○○○	
		○○○	
산업 건설 위원장		○○○	
		○○○	
		○○○	
		○○○	
		○○○	

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

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

투 표 용 지



거 창 군 의 회

선거구	성 명	기 표 란
	○○○	
	○○○	
	○○○	
	○○○	
	○○○	